

다이아서버 이용약관(규칙 및 가이드라인)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으며, 도끼다이아에 의해 개정 및 수정이 이루어짐
마지막 개정일 : 2020/05/10 도끼다이아

- 서버의 규칙을 찾으시는 경우,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다이아서버(이하 “서버”라 합니다)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한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라 함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접속자”란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디지털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을 의미합니다.
4. “계정정보”란 회원의 접속정보와 닉네임, 플레이 기록 등 접속자가 서버에 제공한 정보와 게임이용정보 (캐릭터 정보, 아이템, 플레이 시간 등), 이용요금 결제 정보 등을 통칭합니다.
5. “콘텐츠”란 디지털 기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유료 또는 무료의 내용물 일체(게임 및 네트워크 서

비스, 애플리케이션,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를 의미합니다.

6. “오픈마켓”이란 디지털 기기에서 게임 콘텐츠를 설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의미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이란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디지털기기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9. “게임서비스”라 함은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접속자가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하는 게임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서버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임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 관련 커뮤니티에 게시합니다.

② 서버는 회원이 서버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⑤ 서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이용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용제한

'서버'는 다수의 접속자가 사이버 공간으로서, 불법 행위, '접속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금지 행위 및 경고, 이용제한 제도를 언급합니다

① 경고 제도

해당 내용은 이용제한 ③과 연관됩니다

1) 목적

서버의 금지 행위,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하여 경고 제도를 시행중

2) 경고 횟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로 인한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 경고 수는 6 이상임

3) 경고 부여

경고는 운영팀의 판단 및 본 약관에서 다루는 금지 행위의 해당사항에 따라 부여됨

경고 횟수는 서버 내에서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경고가 부여될 경우 BandAPI를 통해 다이아서버 밴드에서 확인가능

② 이용 제한

1) 이용 제한

이용 제한은 서버의 최적화 및 기타 경고 제도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짐

2) 대상

서버에서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접속자

규칙을 위반하여 경고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경고 횟수가 6 이상인 경우

그 외 사유로 인한 영구 뱠, 또는 아이피 뱠에 해당되는 경우

③ 금지 행위

1) 정의

금지 행위란 서버에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의미함

2) 금지 내용

2-1) 서버 내의 채팅 기능 또는 커뮤니티의 채팅, 게시글 그 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1-1) 경고 1~4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2) 같은 종류의 서버(이하 '타섭'이라 분류함)를 승인 없이 언급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2-1) 경고 1~4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3) 서버 또는 커뮤니티 및 다른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특정 상대를 비방하는 욕설 및 비속어 사용

2-3-1) 경고 2~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4) 서버 또는 커뮤니티 및 다른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특정 상대, 물체 등에 대한 비하발언

2-4-1) 경고 2~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4-2)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로, 비방 표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예외. 단,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음. 하지만, 비하 표현 내에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2-3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2-5) 상대방이 허용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이하 '반모'로 분류)

2-5-1) 경고 2~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5-2) 2-5의 행위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반모'를 허용한 경우 예외.

2-6) 서버 또는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 패드립, 섹드립을 사용

2-6-1) 경고 3~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7) 운영자의 권한을 이용한 서버 또는 커뮤니티 공간 내에서 접속자의 플레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경우

2-7-1) 경고 3회~해당직 박탈에 해당됨. 상세 처벌은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8) 서버 또는 커뮤니티에서 연속적으로 글 또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채팅창을 가리는 행위, 또는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2-8-1) 경고 3~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9) 비정상적인 방법, 허용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의 컨텐츠 이용

2-9-1) 경고 3~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9-2)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팀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제외

2-10) 서버에 존재하는 버그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하여 타 유저의 서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버그를 타 유저에게 알려서 공유하는 경우

2-10-1) 경고 3~6회가 부여됨. 상세 횟수는 증거 자료에 따른 운영팀의 판단 후 결정됨

2-11) 어떠한 서버의 컨텐츠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 핵,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한 서버 이용

2-11-1) 경고 6회가 부여되며 영구 차단 가능.

2-11-2) 2-11에서 언급된 프로그램 외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버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2-12) 서버 또는 밴드에서 허용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2-13) 경고 6회가 부여되며 영구 차단 가능

2-14) 서버나 밴드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컨텐츠를 파괴하고 렉을 유발하는 서버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하 '테러'로 분류)

2-14-1) 경고 6회가 부여되며 영구 차단

2-15) 상대방이 원치 않은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2-15-1) 지속성을 판단하여 운영팀에서 경고 지급